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3613
-----------	------

2026년 6월 17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4월 2일, 문성호 의원
2. 회부일자 : 2026년 4월 7일
3. 상정일자 :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6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문성호 의원)

1. 제안이유

- 급변하는 직업 환경 속에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수요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과정이 필수적임.
- 학생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감 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체험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센터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진로교육의 실효성과 학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로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업무에 학생들의 설문 조사 등을 반영한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체험처 발굴 근거를 명시함(안 제10조제5호)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6년 4월 2일 문성호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3613호로 발의되어 2026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 동 개정조례안은 학생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감 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체험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자 발의되었음.

2. 주요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진로교육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10조에 ‘학생들의 설문 조사 등을 반영한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체험처 발굴’ 업무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진로교육법」 제16조는 교육감이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구성·운영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¹⁾

-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9조(진로교육센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이하 “센터”)와 교육지원청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는 ‘센터’ 및 ‘지역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센터와 지역센터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 또한 [표-1]과 같이 구분되어 있음.

[표-1] 서울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비교

	진로교육센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성	장학관 1명, 장학사 3명, 주무관 1명	센터장 포함 2~8명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 진로교육 기획·운영 ○ 초·중등 진로교육과정 운영 및 자료 개발 ○ 서울진로직업박람회 기획·운영 ○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운영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 진로직업교육자문위원회 운영 ○ 진로교육 관련 정책 연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직업체험 운영 ○ 진로 체험 지원인력 모집·활용 등 연계 사업 운영 ○ 진로체험기관 발굴 및 관리 ○ ‘꿈길(진로체험망)’ 활용 및 관리 ○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참가 및 운영 지원 ○ 진로 체험 취약 및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운영
비고	현재 서울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는 관련부서(진로직업교육과 진로교육팀)에서 겸임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청 : 시설 설치 및 운영 - 서울시교육청 : 운영비 일부 지원

- 안 제10조의 ‘학생들의 설문 조사 등을 반영한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체험처 발굴’ 업무는 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항²⁾으로, 이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업무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가 구분되지 않은 현행 조례는 진로교육센터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사이의 업무 효율성 저하, 업무 범위의 모호성, 해석상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개정조례안과 같이 센터의 업무를 신설하기에 앞서, 조례상 ‘센터’와 ‘지역센터’ 업무의 명확한 구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1) 「진로교육법」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2025년 자치구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

로 판단됨.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음.(행정관리담당관-4618, 2026.4.13.)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생들의 설문 조사 등을 반영한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체험처 발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센터의 업무) 제9조의 센터 및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 4. (생 략)</p> <p><u><신 설></u></p> <p>5. (생 략)</p>	<p>제10조(센터의 업무)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학생들의 설문 조사 등을 반영한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체험처 발굴</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